

의안번호	2218482
의 퇴 인	이연희의원
회 답 일	2026. 7. 3.
추계번호	26B227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1항) 1. 실증특례 및 <u>임시허가</u>¹⁾의 부여에 관한 사항 2. 실증특례 및 <u>임시허가</u> 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
2	안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5항 신설) 1.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4.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24조의3(포상)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임시허가”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미대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임시허가 관련 사항을 포함 하더라도 현행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연 4회(분기별 1회) 개최됨										
2	안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미대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위원회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산하에 기 구성·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실무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므로, 현행 실무위원회 운영예산 내에서 개정안에 따른 업무를 수행가능하다는 의견임 [현행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table>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r> <td>설치 근거</td> <td>- 현행법 시행령 제19조²⁾</td> </tr> <tr> <td>위원 구성</td> <td>- 민간위원 11명 *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모빌리티 3명, 자율주행 2명, 자동차 및 배터리 2명, 물류 1명, 법률·규제·행정 3명)</td> </tr> <tr> <td>회의개최 횟수 (2025년 기준)</td> <td>- 연 4회(분기별 1회) * 매 회의 평균 5명의 위원 참석(담당 분야에 따라 참석)</td> </tr> <tr> <td>담당 업무</td> <td>-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상정 안전 사전 검토 (상정 여부 결정, 제반사항 검토 등) - 소관 부처 조정,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내용	설치 근거	- 현행법 시행령 제19조 ²⁾	위원 구성	- 민간위원 11명 *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모빌리티 3명, 자율주행 2명, 자동차 및 배터리 2명, 물류 1명, 법률·규제·행정 3명)	회의개최 횟수 (2025년 기준)	- 연 4회(분기별 1회) * 매 회의 평균 5명의 위원 참석(담당 분야에 따라 참석)	담당 업무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상정 안전 사전 검토 (상정 여부 결정, 제반사항 검토 등) - 소관 부처 조정,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
구분	내용												
설치 근거	- 현행법 시행령 제19조 ²⁾												
위원 구성	- 민간위원 11명 *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모빌리티 3명, 자율주행 2명, 자동차 및 배터리 2명, 물류 1명, 법률·규제·행정 3명)												
회의개최 횟수 (2025년 기준)	- 연 4회(분기별 1회) * 매 회의 평균 5명의 위원 참석(담당 분야에 따라 참석)												
담당 업무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상정 안전 사전 검토 (상정 여부 결정, 제반사항 검토 등) - 소관 부처 조정,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												

2) 시행령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의 효율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24조의3(포상)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등 지급(안 제24조의3)

- 개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수, 포상금 지급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 등을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검토 대상이 되는 안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모빌리티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기술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